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 9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 제정이유

-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를 도로를 1개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 등의 공사로 함.(안 제3조)
-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7인이상 15인이내의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회의의 민주성,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인으로 함.(안 제7조)
-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시민들의 대형공사장 불편 해소를 위하여 소형 공사장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소형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평시 업무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이행자 처분사항으로 과태료가 너무 가중하다고 판단되는데 ?		○ 도시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시가 평균이상이라고 판단되었음.	
○ 조례 규정을 보면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중복되었다고 보는데 ?		○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었으며 이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내용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287호
의결 년월일	2004. 9. 9

제안년월일 : 2004년 9월 8일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 기능중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을 심의·조정하는 내용과 동 조례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자문기능을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가 하도록 하고
-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함.

2. 주요골자

-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가하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의 과태료 처분을 300만원으로 함.
(안 제12조제1항)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은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가 한다.

안 제8조중 “자문회의”를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중 “ 1,000만원이하”를 “300만원이하”로 한다.

신 · 구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신설></p> <p>①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p> <p>②자문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p> <p>1. 관계공무원</p> <p>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p> <p>3.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③위원장은 도로관리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⑤자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p> <p>⑥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⑦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자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받아야 한다.</p> <p>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u>교통소통대책에관한</u> 사항의 자문은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가 한다.</p> <p>①<삭제></p> <p>②<삭제></p> <p>③<삭제></p> <p>④<삭제></p> <p>⑤<삭제></p> <p>⑥<삭제></p> <p>⑦<삭제></p> <p>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 ----- ----- ---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p> <p>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 ----- ----- 300만원이하 -----.</p>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제287호
의결 년월일	2004. 9. 9 (제114회)

제출년월일 : 2004. 8. 25.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정이유

-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를 도로를 1개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 등의 공사로 함.(안 제3조)
- 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7인이상 15인이내의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회의의 민주성,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인으로 함.(안 제7조)

마.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수정안 포함]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 각호에서 정한 도로중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은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가 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제출 받은 시장은 이를 지체없이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 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점용허가 신청) ①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85.10.16, 93.8.14, 94.9.16, 96.7.1, 99.8.6)

- 1.점용의 목적
- 2.점용의 장소와 면적
- 3.점용의 기간
- 4.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 5.공사시설의 방법
- 6.공사의 시기
- 7.도로의 복구방법

(별표 1)

4.공사방법

- (1)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3)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키는 등 도로교통의 위협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